

의안번호	2216192
의 퇴 인	서왕진의원
회 답 일	2026.2.5.
추계번호	26B02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작업중지 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200만원(연평균 84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및 고지의무 (안 제52조의2)	42	—	—	—	—	42	8.4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사업의 추진 내용 및 연구용역의 시행 주기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이 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2. 이상기후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u>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중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함(제2항)</u>	의무규정
		<u>정부는 제1항의 작업중지에 따라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u>	재량규정
2	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u>근로자는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제1항)</u>	재량규정
		<u>사업주는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u>해고나 불리한 처우 및 부당한 근로 요구를</u> 해서는 아니 됨(제4항)</u>	의무규정
		사업주는 작업중지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아니됨(제5항 신설)	
3	안 제52조의2(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및 고지의무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별·직종별로 구분하여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별·직종별 지침을 관리감독자에게 교육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별·직종별 지침의 수립 절차·내용과 교육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3항)	
4	안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70조제1호의2 신설) 1의2. 제52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및 부당한 근로 요구를 한 자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 미대상(제1항) －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작업중지와 관련한 사업주의 범위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²⁾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³⁾를 포함하고,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상기후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첨부(제2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중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로서 임금의 손실을 보상해야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임금 보상 기준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사업대상자 및 지원단가 등도 불확정적이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1)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	• 미첨부(제3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작업중지에 따라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와 지원 방식, 기준, 대상, 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재정지원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 미대상 -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작업중지와 관련하여 해고나 불리한 처우 및 부당한 근로 요구를 하지 못하고(제4항), 작업중지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제5항)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52조의2(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및 고지의무)	○	• 비용추계(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	• 미대상(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고지의무) -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별·직종별 지침을 관리감독자에게 교육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170조(벌칙)	—	• 미대상 -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⁴⁾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3)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별·직종별로 구분하여 사업주의 작업중지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지침의 수립 절차·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
 - 다만, 본 추계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작업중지와 관련한 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 이때,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4,200만원)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연구용역은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42	—	—	—	—	42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사업의 추진 내용 및 연구용역의 시행 주기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이하 생략)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을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